이러닝원격교육 위탁계약서

본 계약의 __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세종홍익아카데미(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이러닝원격교육 훈련에 대한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계약의 범위)

“갑”이 위탁한 이러닝원격교육 훈련과정 및 수행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훈련과정명	계약 기간	1인당 과정 단가	비고

가.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훈련과정으로 다음과 같다.

나. 계약기간은 이러닝원격교육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간과 최종 결과 분석 평가서를 제출하는 기간까지를 의미한다.

다. 훈련기간 및 훈련인원은 “갑”의 요구에 의해 변경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 변경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훈련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라. “을”은 훈련종료에 따른 훈련결과 분석 평가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계약기간 종료되기 1개월 전 “갑”의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 된다.

제2조(교육비 및 지불방법)

가. 교육비는 교육시작일 기준의 고용노동부 기업규모에 따른 사업주부담금을 의미한다.

나. “갑”은 “을”에게 교육비를 훈련개시 전에 지급하며, 교육비는 총 ₩_____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농협 355-0058-7556-23 예금주 : 세종홍익아카데미(주)]

제3조(수료)

가. “을”은 훈련과정 인정(또는 지정)상의 훈련수료 기준**(평가 60점 이상, 진도율 80% 이상)**을 취득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4조(훈련결과 평가서 제출)

“을”은 훈련종료시 훈련전반에 대한 결과 분석 평가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 향후 “갑”의 훈련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성실의무)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훈련의 효율적인 진행과 훈련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훈련이 이행될 수 없을 경우 잔여 대금에 대한 지불의 의무를 갖지 않고 “을”은 기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다.

다. “을”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에 따라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인정·지정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갑”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을”이 책임을 진다.

라. “을”은 “갑”이 교육 시작 3일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 받은 교육비 전액을 지불하고,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가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7조(해석 및 합의)

본 계약서상의 조문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8조(기타)

가. 훈련 미수료자 및 중도 퇴사자 발생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나. “갑”은 훈련생이 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수료 처리됨으로써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을)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312-86-51895
회사명		회사명	세종홍익아카데미(주)
대표자		대표자	고 영 진 (인)
주소		주소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46번길 46-8(에버그린 104)